

문서번호	BSKS-3-1-40
제정일자	2007.11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5

2007.11.23.제정 2011.12.01.개정 2016.04.01.개정 2018.11.19.개정 2019.12.20.개정 2021.02.24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구 성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3절에 의한 대학 평의원회의 기능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이 대학평의원회는 부산경상대학평의원회(이하 "평의원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- 제3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.
 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4조(구성) 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 교원·직원·학생·동창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,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조(자격 및 정수) ①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교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그 자격과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8.11.19.>
 - 1. 교원 4인 : 조교수 이상
 - 2. 직원 3인 : 사무직원
 - 3. 학생 2인 : 총학생회장, 대의원의장 또는 총학생회 추천자
 - 4. 동창회 1인 :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은자
 - 5.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위원 1인



문서번호	BSKS-3-1-40
제정일자	2007.11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5

- ② 평의원 추천 및 구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항 신설 2018.11.19.>
 - 1. 교원 : 전체 교원의 투표를 통한 아래 가, 나, 다목의 각 최다득표자(기획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재직인원 비율을 적용한 의원수 구성)
 - 가. 일반교원
 - 나. 산학협력중점교원, 산업체경력교원
 - 다. 강의중점교원, 강의전담교원, 외국인교원 <개정 2019.12.20.>
 - 2. 직원 : 일반직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다득표자(교직원 보수규정 제2조 및 직원인사규 정 제2조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.) <개정 2019.12.20.>
 - 3. 학생 : 총학생회장, 대의원의장 또는 총학생회장, 대의원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
 - 4. 동창회 : 총동문회장 또는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
 - 5. 외부위원 : 학과장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(2인 이상 추천 시 전체 교원의 투표를 통한 최다득표자) <개정 2019.12.20.>
- **제6조(임기)**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평의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학생 평의원의 경우 1년(재학기간)으로 한다.
- 제7조(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 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 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
- 제8조(회의) ① 평의원회 정기회의는 매 학년 2-3월과 7-8월에 개최한다.
 - ② 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.
 - ③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개의 및 의결정족수) ①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 - ②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회의록)** ① 평의원회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회의록에는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평의원 중에서 지명하는 3인이 기명날인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.
 - ③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공개한다.<항 신설 2021.02.24.>



문서번호	BSKS-3-1-40
제정일자	2007.11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5

- 제11조(출석)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평의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해당 교직원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평의원의 의무) ①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평의원은 당해 대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제13조(재정) ① 학교의 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평의원회에 출석한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간사)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.
 - ② 삭제 <2018.11.19.>
 -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한다.
- 제15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준용 및 운영 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'학장'을 '총장'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0
제정일자	2007.11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평의원의임기 만료 후 교원과 직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임기 중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개정된추천 절차를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0
제정일자	2007.11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5

[서식1]

추 천 서

대학평의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.

- 1. 추천위원 :
- 2. 직급 :
- 3. 추천사유

20 . . .

: (인)

: (인)

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